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 3069

제출년월일: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,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이에 서울시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 회계연도 서울 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○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복지재단

구 분	시설현황	
본 관	 위 치 :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(5층, 8~10층) 전용면적 : 3,665m² 주요시설 : 정책연구센터, 평가인증센터, 고립예방센터, 사회서비스지원센터, 경영기획실, 감사실 등 	A 2 A 1 A 1 A 1 A 1 A 1 A 1 A 1 A 1 A 1
흑석동 별 관		

○ 관련법령

- 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조례 :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사업

-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・연구
- 복지 분야의 평가·심사 및 인증
-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
-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사회서비스 품질관리
-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
- 저소득·취약계층을 위한 법률·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등
- 다. '26년 총 소요예산(안) : 82,537,356천원
- 라. '26년 예산 산출근거(안)
 - 사 업 비 : 56,772,498천원
 - 기관운영비(인건비, 운영경비 등): 25,764,858천원

마. 출연의 필요성

-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,
-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확산,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, 지역중심 복지통합 서비스 지원, 시민 일상 속 복지욕구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 편성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실 복지정책과 이보열 (☎ 2133-7332)